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자가격리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- 관련근거 :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70조의4(감염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
- 사업기간 : 2020. 2. ~ 상황 종료 시까지
- 지원대상 : 안산시 거주 자가격리자
- 지원물품 : 1인당 55,000원 상당의 간단 조리가능 식료품 지원
  - 즉석밥, 3분카레, 3분짜장, 생수, 봉지라면, 컵라면, 김, 통조림류(참치, 장조림 등), 즉석국
  - ※ 구성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- 전달방법 : 우체국 택배 전달